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337

발의연월일: 2025. 2. 21.

발 의 자:김도읍・박형수・구자근

신동욱 • 조배숙 • 인요한

김희정 • 이헌승 • 서지영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은 제외되어 있어 학원가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음. 특히, 최근 청소년들의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를 통한 흡연이 증가하고 있어 흡연으로부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원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구역을 말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 6 |
|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 |
|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 | |
| 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 |
|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 | |
| 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 |
| 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 | |
|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 |
|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 | |
|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 <u>.</u> |
| 정한다.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 |
| | 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
|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
| | 학원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 |
| | 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
| |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
| | 을 말한다) |
| ⑦ ~ ⑨ (생 략) | ⑦ ~ ⑨ (현행과 같음) |